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9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8.7.~8.20.) -

August 22,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8/7~8/20)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 · 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함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의 전반을 의미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개체수(개, 고양이) : ('12) 364만가구/556만마리 → ('22) 602/799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 · 표시 · 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세계/국내시장 규모 : ('22) 3,781/62억달러 → ('32) 7,762/152 (연평균 7.6%↑/ 9.5%↑)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 4대 주력산업 육성, ② 성장 인프라 구축, ③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함 **첫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하는 바,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2024년)함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함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제도 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하며,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2023년),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2024년)하여 제공키로 함	2023-08-09

부처	내용	일시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하여 공유키로 함 **둘째,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로 함.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함 연관산업에 특화된 기금 100억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마련(2024년)키로 함 **셋째,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지원과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함 **넷째,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024년~)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함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금융
위원회</td><td>

• <u>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u>

금융위원회는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이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23.2월, 제4차)’에서 발표한 ①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②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③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5월 2일 금융위원장 주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의 현장 인터뷰 등에서 나온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것임

*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은행연합회

<table>
<tr><td>목표</td><td colspan="3">“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
- 정부가 방향 제시, 민간·공공이 합동하여 지원 -</td></tr>
<tr><td>3대
정책
방향</td><td>1 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 (4.1조원+@)</td><td>2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7조원)</td><td>3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무역금융 지원)</td></tr>
<tr><td>10대
과제</td><td>① 신규수출국 진출지원 (3.3조원)
② 해외 수주 금융지원 (0.3조원+@)
③ 공급망대응펀드 조성(0.5조원)</td><td>①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 (11조원)
② 전략품목 수출기업 지원 (1.3조원)
③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1조원)
④ 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5.4조원)</td><td>① 수출환어음 비용 경감 및 이용 지원
② 수입신용장 금리 · 만기 우대
③ 수수료 인하 등 선물환 이용 지원</td></tr>
</table>

</td><td>2023-
08-16</td></tr>
<tr><td>개인정보
보호
위원회</td><td>

• <u>「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u>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함

현재는 기업 ·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개개인은 데이터 활용·관리에 있어 수동적 지위일 수밖에 없음. ’23.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임

</td><td>2023-
08-17</td></tr>
</table>

부처	내용	일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음. 또한 마이데이터로 기업 · 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가 융합되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체질을 한 단계 올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23년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 · 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여 '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임 **【 마이데이터 로드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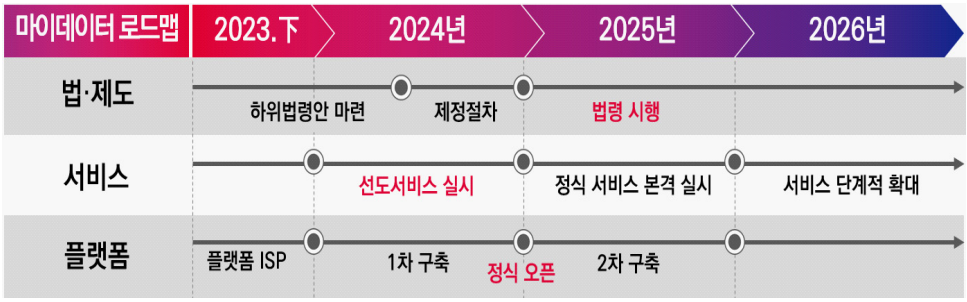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장 수용성,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 **②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구현** **【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 	

부처	내용	일시
	③ 민간 · 시장의 역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 정책 운용 【 마이데이터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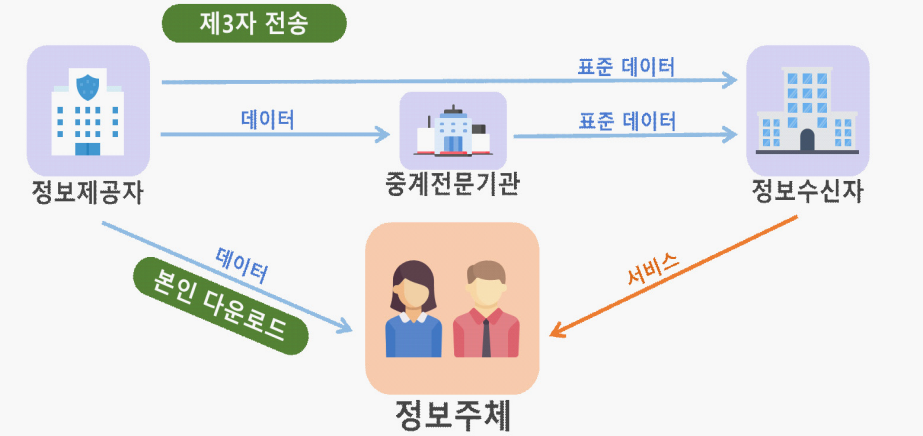 ④ 선행부문과 원활히 연계하고 신규부문으로 국민편익 확산 ⑤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마이데이터 안착	
관세청	•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환경 변화, 다양한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함 주요 추진배경으로는 ① **(물류환경) 복합물류·3자물류(3PL)·콜드체인(定溫物流),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치·고효율 물류 등장** ② **(업계) 반도체 · 방산 업계 등 보세제도 규제 완화, 수출 지원 요청*** * 물류업계(선사·창고·운송사·특송업체·해운협회 등), 제조업계(반도체·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 유관협회 등), 한국관세사회 등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23.4.~) **< 보세제도 개념 및 종류 >** • **(개념 · 종류) 수입물품 과세가 보류된 상태(보세)**로 **보관, 운송, 제조 ·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보세창고**(보관), **보세운송**(운송), **보세공장**(제조 · 가공) **등으로 구분** • **(의의)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이 **가능해**, 외국 원재료 활용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수출 지원책*** *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중('22) :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2023-08-09

부처	내용	일시
	주요 추진과제로는 **①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全 과정 규제 혁신** –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②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 기업 자율관리 확대** –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 – 첨단산업의 보세공장 활용 확대 **③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 공항 · 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면 개편 – 공항 · 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보건복지부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8.11. 시행)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작성하는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지출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별도로 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영업소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제44조의2, 제44조의4 신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제60조제1항제1호의2 등)**	2023-08-11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3.8.11. 시행) 제조업자 및 제조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작성하는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지출보고서의 공개 절차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지출보고서 서식에서 종전에 의료인 등의 소속을 기입하도록 하던 것을 기관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 기관 명칭 외에 요양기관기호도 함께 기입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3조, 제4조의2 신설, 제5조 등)**	2023-08-11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2024.2.17. 시행 예정)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공급·판매하거나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환경부장관이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수입, 판매 중개 및 구매를 대행하는 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제60조제1항, 제82조제1항, 제89조제8호, 제92조제10호 등)**	2023-08-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3.8.16. 시행) 전기 · 전자제품 제조 · 수입업자는 재질 · 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기 · 전자제품 제조 · 수입업자가 제출한 재질 · 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2023-08-16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3.8.8. 시행)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제112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제112조의2 신설, 제113조제1항제3호, 제162조제10호, 제165조제2항제26호)**	2023-08-08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8.11. 시행)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천재지변 ·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천재지변 · 화재 또는 침수로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정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의 방법 및 임시검사 명령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63조제1항, 제63조제1항 각호 신설, 제63조제4항 신설, 제79조, 별표 15 제4호 등)**	2023-08-1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 (2025.2.17. 시행 예정. 다만, 제30조의3제1항, 제32조의2제3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52조의 개정규정 중 튜닝부품인증에 관한 부분, 제72조제1항, 제81조제16호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며, 핵심 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23-08-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제2조에 제1호의6 신설, 제7조제6항, 제30조의3제1항, 제30조의7제1항, 제30조의8 신설, 제31조제14항 신설, 제32조의2제1항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2024.2.17. 시행 예정. 다만, 제5조의2, 제14조의8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청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며,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동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 투자 · 운용을 위탁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 · 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의 공모 기간을 현실화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률 및 이익준비금 적립 예외규정의 일몰을 폐지하며, 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제3조제4항, 제5조의2 신설, 제9조제2항제3호, 제9조의2제6항, 제11조제1항, 제14조의8제2항 등)**	2023-08-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3.8.8 시행. 다만, 제1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고열량 ·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고, 종전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등)**	2023-08-0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2.9. 시행 예정) **현지실사 대상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2 신설, 제6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2023-08-08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8.11. 시행) 의약품 등 시험 ·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제형에 대하여 5개 이상의 시험 · 검사 항목을 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제형에 따른 당연지정 시험 · 검사 항목은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약사법」에 따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백신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주사제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제형에 대하여 당연지정 시험 · 검사 항목을 포함한 5개 이상의 시험 · 검사 항목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제형 및 시험 · 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시험 ·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11조제3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2 신설)**	2023-08-11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2.9. 시행 예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위원의 자격 요건에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제24조제3항, 제24조제5항)**	2023-08-0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 특례를 도입하고,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장학법인 등 공익법인 신청기한 특례 신설 (안 제39조)** – 종전 당연 지정기부금단체등에서 지정심사 및 고시대상으로 변경된 단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으로 인정 ②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한도 기준 명확화 (안 제57조)**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를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8/10(목)~9/7(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2023-08-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한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벤처모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안 제35조제5호)** –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함 ② **민간벤처모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안 제40조제1항제13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부분만큼만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2023-08-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2023/8/10(목)~9/7(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23.10.19 시행예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검토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조항을 삭제함 (현행 제18조제4항 삭제)** **② 법률에서 위임한 영향평가 실시 기한을 구체화 함 (안 제35조제1항)** **③ 재평가 실시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35조제2항)** **④ 영향평가 결과서의 제출 (안 제35조제5항)** – 국가기관등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영향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규정함 **⑤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공시 (안 제35조제8항, 제9항)** – 국가기관등의 장이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시하는 시기를 구체화함 **⑥ 재평가 관련 미비사항 보완 (안 제3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 영향평가에 대해서만 규정하던 기존 규정이 재평가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함 **⑦ 영향평가 검토 절차 구체화 (안 제35조의2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 담당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⑧ 개선조치 협의 절차 구체화 (안 제35조의2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토 결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30일 이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⑨ 개선조치를 미이행할 수 있는 경우 (안 제35조의2제3항)** –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선조치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 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7(월)~9/1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로 제출	2023-08-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보호 공시 내용 취소 등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규칙으로 상향입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 (안 제3조의2 신설)** –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대상 및 면제, 검증 방법, 검증 절차, 수정 요청,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② **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 (안 제3조의3 신설)** – 정보보호공시자는 사전점검기관으로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기업에게 공시 내용 검증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③ **정보보호 공시 이행 취소 (안 제3조의4 신설)** – 공시 내용 검증 절차 중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 공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④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3조의5 신설)** – 정보보호공시의무자 해당여부, 공시 내용 검증 및 절차 등 공시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11(금)~9/8(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로 제출	2023-08-11
법무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82호, 2023. 9. 29. 시행 예정)」이 개정됨 이에 따라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리인의 선임신고 자료 구체화 (안 제5조의5)** – 관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선임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함	2023-08-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안 제11조의2)** – 지자체장이 관리인에게 규약, 의사록,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추가 (안 제13조)** – 동 법상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되는 본인인증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추가함 ④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신설된 과태료 규정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 ⑤ **관리인 선임신고서 개선 ([별지서식])** – 관리인의 관리범위를 '관리단', '단지관리단',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명확한 신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함 ※ 의견 제시기간 :2023/8/11(금)~8/25(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 (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5항, 제36조제3항, 제48조제6항)** ② **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후 처리규정 명시 (안 별표 8 제1호나목1)파), 제2호나목1)바))** –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거 마련 ③ **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 (안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⑧)** –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시에 휴식을 취하도록 개선 ④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시 누적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 (안 별표 13의2)** ⑤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 (안 별표 20 제9호)** ⑥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 (안 별표 31 제4호가목)** –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 마련	2023-08-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 (안 별표 36 제1호, 제2호) **⑧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 (안 별표 36 제1호)** **⑨ 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 (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3호)** – 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 (안 별지 제1호, 제19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 의견 제시기간 :2023/8/16(수)~10/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로 제출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22. 4. 14. 시행)됨 이에 따라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므로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폐지** –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통보 행위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라목, 제33조제5호)**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③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안 제34조제1항제9호 신설)** **④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안 제41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⑤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안 제43조, 안 제43조제9호 및 제11호 신설)** ※ 의견 제시기간 :2023/8/11(금)~9/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로 제출	2023-08-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 (안 별표 1)** –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②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안 별표 1)** –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③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안 제2조)** –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④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 –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 –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 의견 제시기간 :2023/8/8(화)~9/1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	2023-08-08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3.11.17 시행)으로 **사업전환의 범위에 기존의 제품 ·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 ·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새로 도입하는 등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사업 분야의 사업전환 인정기준 규정 (안 제2조)** – 기존 사업전환 인정기준을 신설 전환유형(법 제2조제2호다목, 新제품 ·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	2023-08-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신사업 분야의 범위 추가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 신사업 분야에 중기부장관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 의결하는 사업 분야 추가 ③ **사업전환심의위원회 도입 (안 제5조 신설)** – 회의 소집 및 의결기준, 위원 및 사무관리 등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④ **신설 전환유형의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 도입 (안 제8조)** – 신설된 전환유형(新제품 ·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을 우선 승인기준에 추가 ⑤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도입 (안 제8조의2 신설)** –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 준용) 규정 ⑥ **사업전환심사위원회 도입 (안 제9조 신설)** – 사업전환계획을 심의 · 승인하는 '사업전환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⑦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 (안 제14조의2 신설)** – 성과평가 · 관리의 대상, 내용, 주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의견 제시기간 :2023/8/17(목)~9/2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	
금융위원회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감독규정안 제2조)**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지역금고를 자산보유자에 포함하는 등 자산보유자의 범위 규정 ② **변경등록의 예외 (안 제2조의2, 감독규정안 제6조)** –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의 경우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정신고토록 함 ③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 (안 제5조의2, 감독규정안 제16조)** –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 ④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안 제5조의3, 감독규정안 제18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 증권의 발행 및 변동에 관해 공개해야 할 추가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이를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규정	2023-08-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⑤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안 제5조의4, 감독규정안 제18조의3)** – 의무보유 주체를 추가 규율하고, 의무보유비율을 100분의 5로 하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며, 보유방식을 규정 ⑥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업무위탁 (안 제5조의5, 제5조의8, 감독규정안 제7조, 제23조** –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주의, 고발·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접수 업무 및 조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⑦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안 제5조의6, 감독규정안 제19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해산·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⑧ **과징금·과태료 관련 규정 (안 제5조의7, 별표, 감독규정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별표 제1호, 별표제2호)** – 과징금(의무보유 관련), 과태료(발행내역 공개, 보고의무 위반 등 관련)의 구체적인 기준 및 위탁 권한을 규정 ※ 의견 제시기간 :2023/8/11(금)~9/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축소 (안 제14조)** –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삭제 ②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안 제23조)** –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現 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③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근거 명확화 (안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회사의 외부감사법 제6조 제6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추가 ④ **한국거래소에 대한 지정감사 분쟁조정업무 위탁근거 마련 (안 제44조)** –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 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대통령령 제29269호 부칙 제3조)**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24년→’29년)	2023-08-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2023/8/11(금)~9/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로 제출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년부터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 · 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 · 공표됨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1차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 확대 (안 제2조제3항)** – 자격사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임 **②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 (안 제4조제6항 신설)** –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함 –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 * (예) ❶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❷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❸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❸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③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 등)**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	2023-08-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 –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 사항을 반영 ※ 의견 제시기간 :2023/8/18(금)~9/2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정무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서는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5년임 그런데 최근 한 건설회사가 '오너 2세'가 경영하는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만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 경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도 현실에서 무력화되거나 위하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29조의2 신설)**	2023-08-0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이던 것이 2023년에는 8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3-08-1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 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 이외에는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11조에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는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규정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바,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여 실무상 소송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한 사례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을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023-08-1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음 (안 제96조의2 신설)** **②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비밀엄수의 의무 적용을 제외함 (안 제110조 및 제119조)** **③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시, 해당 침해의 증명을 추가함 (안 제111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3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5조의3 신설)**	2023-08-0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 사채(Bond with Warrant; BW)를 발행하는 때에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의 경우 사모(私募) 발행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영진이 경영권 ·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에 '콜옵션(call-option)'을 부여하여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추후 일정량의 전환사채를 되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발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023-08-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러한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콜옵션만을 분리하여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발행회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콜옵션을 매수한 뒤 유리한 시점에 이를 행사하여 용이하게 지분을 확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콜옵션부 전환사채 역시 주권상장법인 경영진의 경영권 · 지배권 방어 목적에 악용되지 않도록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더라도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10제3항 및 제446조제28호의2 신설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이 총 691억 8,800만원인데, 법인으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약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인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72조제1항, 제446조제30호의2 신설)**	2023-08-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임. 신고인이 해당 신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제출한 날을 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가 해당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때를 신고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기산점이 불분명한 상황. 이에 따라 예측 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산점에 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인지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신고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하고, 분쟁조정절차로 이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함 (안 제22조제4항제1호)**	2023-08-1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3인)」**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 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 · 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제35조의6 신설)**	2023-08-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이전 전과 동일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생산활동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본 규정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물류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안 제85조의9)**	2023-08-0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의 하나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지출 ·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항공안전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 등을 통한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항공안전투자와 관련한 시설 투자는 주로 인천국제공항 · 김포국제공항 등이 위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항공안전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대기업은 100분의 3, 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안전투자를 촉진하고, 항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및 제130조)**	2023-08-0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있음. 특히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세특례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이어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 (안 제30조의3제1항)**	2023-08-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발 · 이용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생성 가능성도 큼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ChatGPT 4.0 출시 이후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고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2025년경)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단순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 · 고위험 인공지능 · 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023 08-0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인공지능,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③ 금지된 인공지능 이외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하여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을 정함 (안 제5조)** **④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함 (안 제6조)** **⑤ 저위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또는 사진 · 음성 · 영상 등을 실제와 같이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하도록 함 (안 제7조)** **⑥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12조)** **⑧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 ·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9조)** **⑩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함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⑪ 고위험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현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3-08-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그런데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등의 행위를 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 및 제71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최근 주요국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활력 모색을 위한 투자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기업부실 확대를 넘어 자칫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협으로 전이될 위험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사업재편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 지원하였으며, 약 2만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공급과잉 해소 또는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재편에만 적용하고 있어 기업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적 행위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하고자 함	2023-08-0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목적에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함 (안 제1조)** **②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사업재편 유형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체계화함 (안 제2조 및 제4조)** **③ 법무부 1급 공무원을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추가하고, 사업재편 유형 체계화 등에 맞추어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요건 및 절차를 정비함 (안 제6조 · 제9조 및 제10조)** **④ 원활한 사업재편지원을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의2 신설)** **⑤ 사업재편 이행 우수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⑥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행사를 반대하는 소액주주 반대요건을 현행 「상법」 규정과 같게 변경함 (안 제16조)** **⑦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로 완화함 (안 제17조)** **⑧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 기간을 사업재편계획기간으로 정비함 (안 제21조·제22조 및 제23조)** **⑨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신설함 (안 제24조의3 신설)** **⑩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 (안 제24조의4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⑪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2 삭제)** **⑫ 전담기관이 이행점검 과정에서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33조)** **⑬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36조의2)** **⑭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 (법률 제14030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 삭제)**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요건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과 신산업창업 중소기업)의 매출과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성장이 지체되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수년이 경과한 창업기업 등도 여전히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창업기업 등의 요건 혹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창업기업 등으로 간주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	2023-08-0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 및 석유가스)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 · 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이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 · 사업장 폐기물 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석유정제업자가 이와 같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2)**	2023-08-1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거나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사이가 좁은 등 장애인이 충전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2023 08-1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정책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임 특히,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큰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외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와 같이 수소 충전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7월 27일 현재 수소연료 전국평균 가격은 1kg당 9,727원으로, 수소버스는 3,500원/kg, 수소화물차는 4,100원/kg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영국 역시 수소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이는 이동 수단보다 연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수소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영국은 녹색산업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수소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신설)**	2023 08-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류호정의원 등 11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석탄발전소의 감축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음 석탄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그런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위치할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허가를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의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②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안 제2조)** **③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5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안 제6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이 중단된 석탄발전소의 처리와 활용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의하고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정부는 석탄발전사업과 관련이 있는 노동자, 기업 및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	2023 08-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⑦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9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2인)」**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 · 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②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4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④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안 제36조제1항)** 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안 제36조제2항)**	2023 08-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4인)」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함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천 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함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하여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2023 08-0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중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큼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56조제2항제13호)**	2023 08-0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등)**	2023 08-1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 · 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 일본 등 타 국가 대비 기준이 엄격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으로 인해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1톤으로 완화하고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상 예방 · 대응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던 것을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별로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	2023 08-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물질관리, 시설관리, 영업관리 등 모든 이행사항에 대하여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취급기준, 표시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해당 물질들의 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였으나 여타 유독물질과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설관리 기준 적용 등 사고예방 · 대응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용도관리를 위해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관리된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며,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안 제2조)** **②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 등을 이행하도록 함 –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유해성 · 취급량 등에 따른 정기검사 및 검사 면제 대상을 마련함 **④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및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판매자의 고지 의무를 마련함 (안 제28조부터 제29조의3까지)** **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와 영업신고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32조)**	2023 08-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교통위원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지정되는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 위치 · 면적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옥상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많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특성상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 일치를 통한 RE100 달성에 효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 ·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항제7호 신설)**	2023 08-0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 시공, 전관 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음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실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내지 준법감시인 제도에 의해 내부 통제가 강화되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4항 · 제5항 및 제9조의4 신설)**	2023 08-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3년) 영유아가 10m 이상(아파트 기준 4층)의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는 21건, 23건, 18건, 23건, 21건, 9건(2023년 현재)으로 영유아의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5항)**	2023 08-08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8/24(목) 14:00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8/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8호 발간 -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	
	8/23(수)	금주의 서평 제642호 발간 - 도서명 : 도둑맞은 집중력 - 저자 : 요한 하리	
	8/23(수)	「World&Law」 제2023-17호 발간 - 미래를 위한 공급망 실사, 지금 세계는?	
	8/24(목)	「현안, 외국에선?」 제65호 발간 - 영국과 미국의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	
예산정책처	8/23(수)	「NABO 경제 동향」 8월호 발간	

[별첨1] 제409회 국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8/23(수) 14:40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입법영향분석 제도 관련 법안
법사위	8/21(월) 10:00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현안보고 및 현안질의
기재위	8/22(화) 10:00	전체회의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현안보고 및 현안질의
	8/23(수) 10:00	예산결산기금소위	- 결산 심사
	8/24(목) 14: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8/25(금)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8/25(금) 미정	전체회의	- 소위 산회 직후 결산 등 의결
교육위	8/22(화)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8/23(수) 14: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8/24(목) 10:00	예산결산기금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8/25(금)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법안 의결
외통위	8/24(수)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법안 상정, 현안보고
	8/24(목) 10:00	예산결산기금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8/25(금)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국방위	8/21(월) 14: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청원심사 연장의 건 - 현안보고
	8/22(화) 15:00	예산결산심사소위	- 결산 심사
	8/23(수)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결산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8/25(금)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법안 의결 - 현안보고
문체위	8/25(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 현안질의
농해수위	8/24(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심사 및 의결 (소위원장 심사보고) - 수해 관련 현안보고 -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산자 중기위	8/21(월) 14:00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8/22(화) 09:3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8/24(목) 10:00	예산결산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복지위	8/22(화)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8/23(수) 10:00	제2법안소위	- 법안 심사
	8/24(목) 10:00	제1법안소위	- 법안 심사
	8/25(금)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법안 의결
환노위	8/22(화) 10:00	고용노동소위	- 법안 심사
	8/22(화) 14:00	환경법안심사소위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 법안 심사
	8/24(목) 10:00	예산결산기금소위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8/25(금) 10:00	전체회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법안 의결
여가위	8/25(금) 09:00	전체회의	- 현안질의 -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상정 - 법안 상정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1(월) 13: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	김성환·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8/22(화) 10:00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22(화) 10:00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의 책임, 공급망 실사법의 활용과 확장 토론회	이소영·장혜영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8/22(화) 14:00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8/22(화) 15:00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 산업이 된 가짜뉴스	국민의 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8/22(화) 15:00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	김영식 의원실, 대한기계학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8/23(수) 10:30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심상정·박상혁 의원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8/23(수) 14:00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방안 토론회	김교흥·박찬대·맹성규· 배준영·이성만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8/24(목) 14:00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통일정책 세미나]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과제	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호 뉴스레터(제19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8/7(월)	「팩트북」 제103호 발간 - 호명 : 탄소중립	
	8/9(수)	금주의 서평 제640호 발간 - 도서명 : 파묻힌 여성 - 저자 : 마릴렌 파투-마티스	
	8/9(수)	「World&Law」 제2023-16호 발간 - 위태로운 필수의료, 어떻게 지켜야해?	
	8/10(목)	「현안, 외국에선?」 제64호 발간 - 캐나다의 이민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정책	
	8/16(수)	금주의 서평 제641호 발간 - 도서명 :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선동 문화 극복과 숙의(熟議) - 저자 : 패트리샤 로버츠-밀러	
입법조사처	8/7(월)	「이슈와 논점」 2121호 발간 -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	
	8/10(목)	「NARS Brief」 15호 발간 - 중소기업 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과제	
	8/11(금)	「이슈와 논점」 2125호 발간 - 2023년 태국 총선과 정부 구성을 둘러싼 혼란	
	8/11(금)	「이슈와 논점」 2126호 발간 - 탈피오트 제도와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	
	8/14(월)	「NARS 입법·정책」 129호 발간 - 2020년~2023년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	
	8/14(월)	「이슈와 논점」 2127호 발간 -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청가(請暇)제도 : 국내·외 비교와 과제	
	8/16(수)	「NARS Brief」 16호 발간 - 정책국감을 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8/16(수)	「이슈와 논점」 2128호 발간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재결정과 입법	
	8/16(수)	「이슈와 논점」 2129호 발간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금지의 쟁점과 과제	
	8/16(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 1권 : 중점 주제 - 2권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3권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4권 : 행정안전위원회 - 5권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6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7권 : 국토교통위원회 - 8권 :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9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10권 :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8/17(목)	「이슈와 논점」 2130호 발간 -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8/10(목)	「NARS Brief」 15호 발간 - 중소기업 분야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과제	
	8/18(금)	「이슈와 논점」 2131호 발간 -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	
예산정책처	8/16(수)	「분석보고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9(수) 14:00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생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최재형 의원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8/10(목) 10:00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0(목) 10:00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토론회**	강성희 의원실,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0(목) 14:00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김주영·박찬대·이학영·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0(목) 14:00	**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인순·강기윤·고영인· 최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8/14(월) 15:00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	조명희·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6(수) 10:00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학용·홍영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6(수) 10:00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김성주·고용진·김종민· 박성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8/17(목) 10:0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장동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17(목) 14:00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정우택 의원실, 중앙대 산업보안연구 사업단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 지난주 (8/7~8/20)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8/7(월)	방송통신(TMT)	다크패턴 관련 규제동향
8/8(화)	방송통신(TMT)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8/8(화)	에너지 · 자원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8/9(수)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3. 7. 18. 공포되었습니다
8/9(수)	기업인수 · 합병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8/10(목)	자동차·모빌리티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 도입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8/16(수)	공정거래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8/17(목)	ESG	EU 집행위원회, EU의 ESG 공시 이행을 위한 세부지표 채택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